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제6조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영역 구분) 평가영역은 연구, 교육, 봉사, 산학협력으로 구분하며, 영역별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제3조 (연구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① 연구영역 평가는 학술연구와 관련한 논문, 저서,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활동, 창작, 수상 등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② 스포츠운동과학과의 선수지도자심판, 실기, 수상 등의 업적, 미술계열의 전시회 출품, 디자인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 수상 등의 업적은 [별표 4]에 따라 평가한다.

③ 자연과학대학의 원예생명조경학과와 조경계획 및 설계, 수상 등의 업적과 사회과학대학 언론영상학부의 공인된 영상매체작품 업적은 [별표 4]의 미술계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4조 (연구영역 업적인정비율) ① 논문,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예술품 제작, 수상분야의 연구 업적의 점수 환산은 단독은 100%, 2인 50%, 3인 40%, 4인 30%, 5인 이상은 20%로 한다. 단, 논문의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 주저자가 2인인 경우 20%, 3인 이상인 경우에는 10% 가산점을 추가하며, 업적점수 환산은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40%, 5인 이상은 $(100/N)\%+10\%$ 로 한다. (단, 10인 이상인 경우 N은 10으로 간주함) 공동주저자(공동제1저자, 공동교신저자)인 경우에 주저자 가산점(2인 이상 20%, 3인 이상 10%)을 공동주저자 수만큼 $1/N$ 하여 가산한다. 단, 공동주저자의 업적인정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20%로 인정한다.

② 저서와 창작, 전시회 발표의 경우에는 $1/N$ (단, 10인 이상의 경우는 $1/10$)을 업적 점수로 인정한다.

③ 논문,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의 경우, 연구보조원은 연구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연구보조원의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구보조원 인정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전임/겸임교원, 초빙강의/연구교수, 객원교수, 강사, 전임연구원 등인 경우에는 공동연구원으로 우선 인정한다.

1. 본교 소속으로 표기된 재학생, 수료생, 졸업생
2. 외부기관 소속으로 표기되었으나 재학(수료)증명서를 제출한 재학생, 수료생

제5조 (연구업적평가의 세부사항) ① 논문분야의 업적은 발표된 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며, 학술지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는 ISI(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에서 선정한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에 등재된 학술지를 의미한다.
2. <삭제>
3. SCOPUS학술지는 Elsevier사에서 제공하는 SCOPUS DB에 등재된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되는 문서유형 기준을 따른다.
4. 기타국제학술지는 국제저명학술지, SCOPUS학술지를 제외한 기타 국제발간 및 국내발간 영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 단, 국제적인 외국어 학술지 목록 구성이 어려운 학문 분야(예: 국학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목록을 구성하여 국제저명학술지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는 매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평가 발표된 학술지를 말한다.
6. 기타국내학술지는 등재학술지 및 등재후보학술지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기타학술지를 말한다.

② 저서분야의 업적은 ISBN이 수록된 출판물 중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전공분야의 국외전문학술저서란 200쪽 이상의 분량과 다수의 인용주를 갖추고 있으며, 국외저명출판사가 간행한 동일학문분야 연구자를 독자층으로 하는 전문학술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2. 전공분야의 국내전문학술저서란 200쪽 이상의 분량과 다수의 인용주를 갖추고 있으며, 국내저명출판사가 간행한 동일학문분야 연구자를 독자층으로 하는 전문학술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3. 전공분야의 대학교재/교양저서란 150쪽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내저명출판사 및 대학출판사가 간행한 전공학생 또는 일반인을 독자층으로 하는 전공분야 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4. 학술번역서/문학작품단행본은 150쪽 이상의 분량을 갖춘 국내저명출판사 및 대학출판사 간행 전공분야 서적으로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저서이다.
5. 편저는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의 논문 및 이론들을 모아 출판한 서적으로, 자신이 직접 저술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6. 학술자료집은 전공분야 학술 및 강연 자료, 색인초록·해제집·컴퓨터매뉴얼, 시청각자료, 주석판 등을 말한다.
7. 일반서적에는 비전공 분야의 저서도 포함된다.
8. 증보·개정판 및 서평은 연구업적으로 불인정한다.
9. 150쪽 미만인 저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서적으로 인정한다. 저서의 해당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학술연구보고서는 연구보고서A, 연구보고서 B, 국제(국내) 표준안 채택으로 구분된다. 연구보고서A/B는 연구기간이 만료된 최종 연구결과물로서 공인된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외부 연구 과제에 국한하며, 연차보고서는 제외된다. 연구보고서 A유형은 본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중앙관리를 적용받은 연구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B유형은 A형 이외의 연구과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말한다.

④ 학술회의의 활동 분야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국제학술회의 발표는 공인된 국내외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학술대회,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표 논문집에 전문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2. 국내학술회의 발표는 공인된 국내 학회(한국연구재단 등록된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학술대회, 워크숍, 강연회, 토론회 등에서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학술발표 논문집에 전문 또는 초록이 게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로 한다.

3. 교내·외 공인 세미나·학술회의·토론회 발표는 위 1, 2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발표 및 기조강연을 말한다. 단, 교내의 인정 범위는 일반부설연구소에서 개최되는 학술회의, 워크숍, 세미나로 해당기관이 공식 통보한 명단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창작 분야는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과 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 획득으로 구분된다.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은 공인된 전문공연장에서 개최하는 연극에서 연출 또는 기획을 담당하여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개최구분에 따라서 ‘국제’는 국외의 전문극단이 제작하여 국외 전문공연장(300석 이상)에서 60분 이상 개최하는 것을 말하며, ‘국내저명’은 문화관광부 등록 전문공연장에서 60분 이상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단, 동일작품을 재공연 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업적점수의 50%를 인정한다. 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 획득은 공개소프트웨어포털을 통해 검증된 공개소프트웨어라이선스에 한하여 인정된다.

⑥ 연구관련 수상은 상장/상패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전시회 출품 및 예술품 제작 분야 업적의 경우, 참가국가, 작품 수 등이 증명될 수 있는 실적물 원본이나 도록, 작품 사진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교육영역은 강의, 논문지도, 학생지도, 교육관련 수상, 정부정책사업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제7조 (교육업적평가의 세부사항) ① 강의분야 평가는 강의평가, 강의개선, 강의시간, 대형강의, 강의계획서 제출, e-class 개설 강좌,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강의록 공개, 영어강의,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공개강의, 수업촬영 및 분석, 교양과목 개설 등을 평가한다. 결강·보강계획서 사전 미제출, 강의계획서 미입력, 성적처리 기간 미준수 시, 감점한다.

1. 강의평가

가. 강의평가는 학부에 개설된 전과목(교양 및 전공)의 강의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각 대학원 소속으로 임용된 교수는 대학원 강의를 포함한 전 과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강의평가 산출방식은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 기준에 의한다.

다. 강의평가 집계 제외과목만을 담당하는 경우, 본인의 최근 3년간(연구년, 휴직 등 기간 제외)의 강의평가 평균점수를 부여한다.

2. 강의시간

가. 강의시간은 학점수에 따라 계산하며 학기별 책임시수를 충족한 경우, 학기별 기본점수 30점, 학기별 초과시수×10점으로 평가하며, 학기당 5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책임시수 연간적용 교원은 연 단위로 계산한다.

나. 2인 이상이 참여한 강의시간은 강의참여시간수를 총강의 시간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출산휴가 등의 사유로 강의시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기본시수로 인정한다.

3. 강의개선(학부) : 학부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원 소속 교수 제외)

가. 직전학기 강의평가 평점평균 대비 상승값 × 150

나. 해당학기 강의평가 평점평균 4.5 이상 : 60

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점수를 적용한다. 강의평가 집계 제외과목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4. 대형강의 : 대형강의는 수강 인원수에 따라 차등 인정한다.

가. 120명이상 : 학점수 × 5

나. 80명이상 -120명 미만 : 학점수 × 4

- 다. 60명이상 - 80명 미만 : 학점수 $\times 3$
- 라. 팀티칭의 경우, 계산된 점수에 1/N로 점수를 산출한다.
5. 강의계획서 제출 : 개설한 모든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의 기한 내에 입력한 경우, 학기당 1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6. e-class 개설 강좌 : e-class를 개설하여 정규 강좌를 1과목이상 담당한 경우, 학기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7.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 강의계획서에 직전년도 시험문제를 '수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의 강의계획서 입력 기한 내에 공개한 경우, 강좌당 시험횟수 $\times 3$ 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강좌당 시험횟수는 2회까지만 인정한다.
8. 강의록 공개
 - 가. 강좌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 나. 주차별 강의계획서/강의노트/강의동영상 중 2종류 이상을 공개하고, 한 학기 강좌 주차별 분량 중 최소 2/3이상 공개한 경우를 인정한다.
9. 영어강의 : 영어강의에 대하여 강좌당 2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영어강의에서 외국인교원 및 외국인 초빙분야로 임용된 자의 영어강의, 영어영문학과와 전공강의, 교양영어강의는 제외한다.
10.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 교수학습센터의 교수법 특강, 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세미나 등 교수법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을 말하며, 1회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11.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대하여 강좌당 3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12. 공개강의 : 공개강의 실적에 대하여 1회당 2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과목당 1회까지만 인정하며, 동일 건에 대해 수업촬영 및 분석과 점수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13. 수업촬영 및 분석 : 교수학습센터에 수업촬영 및 분석을 의뢰한 실적에 대하여 1회당 2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과목당 1회까지만 인정한다.
14. 교양과목 : 교양과목에 대하여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단, 교양대학 소속 교원의 개설 강좌는 해당하지 않으며, 서비스-러닝(S-L) 교과목 등 별도로 인정되는 업적 및 분반은 중복 인정하지 않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
15. 결강·보강계획서 미제출 : 결강·보강계획서를 결강일 당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5점의 점수를 감점한다.
16. 강의계획서 미입력 : 강의계획서를 학기 개시 전까지 입력하지 않은 경우, 강좌당 5점의 점수를 감점한다. 단, 미입력 과목 중 해당학기 신규 임용 교원 담당 과목 및 보직교원 대표 과목, 학기 개시 후 개설 과목, 담당교원 변경 과목은 제외한다.
17. 성적처리 기간 미준수 : 학기별 성적입력 기간내 미입력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감점한다.
- ② 논문지도교수는 석사 수 $\times 10$, 박사 수 $\times 30$ 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 ③ 학생지도 분야는 학부 배정학생지도상담, 학부 기타학생지도상담, 학생상담시간 공지, 세계문화체험 관련 지도교수 담당 등을 평가한다.
 1. 학부 배정학생지도상담 : 학기당 배정학생에 대하여 상담한 실적을 1회에 2점의 점수로 인정하며, 학생상담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5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기 내(8월말, 2월말)에 입력된 실적만 점수를 인정한다.
 2. 학부 기타학생지도상담 : 학기당 미배정된 학생에 대하여 상담한 실적을 1회에 2점의 점수

로 인정하며, 학생상담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기당 5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학기 내(8월말, 2월말)에 입력된 실적만 점수를 인정한다.

3. 학생상담시간 공지 : 학생상담시스템에 학기당 30시간 이상을 학생상담시간으로 공개하여 운영할 경우, 1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4. 세계문화체험 지도교수 : 학기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④ 정부정책사업은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정부정책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등을 평가한다.

1.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 강의계획서, 강의노트, 교수방법, 학습자 분석, 학업성취평가방법, 수업성찰보고서 등을 포함한 티칭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2. Honors 프로젝트, 전공인턴십, 기업맞춤형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경우, 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3. 창의적 PBL,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교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경우, 신규강좌당 20점, 재운영강좌당 10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은 신규강좌만 인정하며, 분반은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봉사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봉사영역은 교내외 봉사 및 봉사관련 수상 등을 평가한다.

제9조 (봉사업적평가의 세부사항) ① 교내봉사

1. 교내 보직별 봉사점수는 [별표 5]와 같다.
2. 보직이 중복될 경우, 상위보직의 점수만을 인정하여 평가하며 이는 교외봉사의 학회 및 기타 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은 본 대학교 「위원회설치 운영규정」에 따라 총장이 위촉한 위원회에 국한하며, 보직으로 인한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 위촉 위원 중 교무위원은 제외한다. 위촉 위원의 회의 참석횟수가 1~4회인 경우에는 5점을, 5회 이상인 경우에는 10점을 추가 부여한다.
4. 교내 정책/특정연구과제 참여 업적은 교내 특정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소학회,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 지도교수 : 학기당 점수를 인정한다.
6. 입시(신입/편입) 전형 참가는 신입 또는 편입 전형 업무(평가, 출제, 감독 등)에 참여하거나 위촉사정관 교육이수 시간에 따라 업적 점수를 인정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7. 외국인 유학생 지도는 외국인 유학생(학부생, 교환학생, 복수학위생)이 수강한 강좌를 담당 한 교원에게 학기당 5점의 점수를 인정한다.
8. 사회봉사 지도교수 참여,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학교현장실습 중간방문지도, 교수회의 참석, 신입생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의 교내봉사 업적은 해당 부서에서 공식 통보한 명단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교외봉사

1.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는 특강, 기고(정기간행물, 문예지 포함), 방송 출연 등을 포괄한다.
2. 법인단체 임원 봉사 업적의 경우, 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각종 위원회 위원 및 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위촉장(기간명시), 학회 임원명단 등의 증빙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4. 동일한 논문에 대한 재심(2심, 3심)은 중복인정하지 않는다.

5. 증빙자료는 본인의 이름과 항목구분근거 등의 정보가 드러나도록 제출되어야 한다. 논문심사의 경우, 심사 완료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 봉사의 경우, 기준으로 제시한 항목이외의 실적도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봉사의 점수계산은 1년 단위로 하되, 평가대상기간을 초과한 업적의 점수계산은 월별로 계산하여 각각 해당연도의 점수에 산입한다.

제10조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 및 기준) 산학협력영역 평가는 산학연구, 산학교육, 산학봉사 등으로 구분하며,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교외연구, 산업자문, 창업, 현장실습 지도, 캡스톤디자인, 산학연계 강의, 취창업 지원, 가족회사 유치 및 운영, 산학협력 관련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산학협력업적평가의 세부사항) ① 지식재산권은 본교 산학협력단을 출원인으로 하는 국내외 발명특허등록, 신품중등록, 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 디자인등록, 실용신안등록 등으로서, 국내외에서 특허권이 최종 등록된 것에 한하며, 등록일을 기준으로 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인정한다. 해외특허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중국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② 기술이전이란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특허, 노하우 등 지적 재산의 외부 기술 이전을 통해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기술이전 실적 10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실적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이전료는 입금일을 기준으로 점수를 인정한다.

③ 교외연구과제는 본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등록되어 연구비가 중앙관리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초 선정시에만 부여한다. 단, 교외 연구비 업적 점수는 연차별로 부여하되,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 점수의 2/(연구자수+1)를, 공동연구자는 1/(연구자수+1)을 업적 점수로 인정하며, 연구보조원은 연구자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산업자문은 본교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산업자문 계약이 발생하여 간접비가 입금된 건에 대하여 인정하며, 기술지도, 경영지도, 디자인지도 등을 포함한다.

⑤ 교원 신규창업은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실험실창업, 벤처기업 등을 모두 인정한다. 공동창업시 1/N 점수를 부여하며, 학교기업은 대표자에 한하여 점수 인정한다.

⑥ 현장실습과정 지도란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을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방학제와 학기제로 나누어 인정한다. 현장실습 계약서와 참여학생의 출석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⑦ 캡스톤디자인이란 교육과정 중에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제 등을 학생들이 팀을 구성하여 스스로 기획,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팀워크, 리더십을 배양하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은 팀 과제로 한 학기 이상 운영될 경우에 교과목 운영 점수를 인정하며,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등의 명칭이 들어간 교과목을 포함한다. ‘교내외 경연대회 입상실적’은 입상확인서, 상장 사본 등을 제출할 경우, 수상일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⑧ ‘산학연계 정규교과 운영’이란 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개편된 기업친화형 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강의 커리큘럼과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한다.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이란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개발·개편된 기업친화형 강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 커리큘럼과 제반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⑨ 기업 취업 실적, 취업 정보 제공 실적, 기업체 방문 실적, 기업 채용설명회 본교 유치, 취업

그룹 진로지도 등은 본교 취업경력개발팀을 통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취업 그룹진로지도는 전공별 학부학생의 취업그룹에 대한 진로지도를 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학생 창업지원(소학회, 동아리)은 학생창업 지원 과정 및 학생의 창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

⑩ 가족회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가족회사 유치는 산학협력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점수 부여한다.

⑪ 산업체 방문 특강이란 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방문/초청 특강을 실시한 실적을 의미하며, 산업체 방문 특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산업체 확인서, 사진과 교육자료 등)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산학연 자문위원은 산업체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 학년도 단위로 점수를 부여한다. 산업체 기술지도, 업무평가 또는 경영자문이란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업 등에 기술 또는 경영자문을 실시한 실적을 의미하며, 회사 방문일자와 자문내용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 인정한다. 산학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는 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한 프로젝트 확인서(기관장 직인 필수)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한다.

⑫ 국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은 사업 신청 후 사업책임자가 참여자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사업신청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해당 사업이 선정될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또한, 국고지원사업 운영 및 실무참여는 1년간 국고지원사업 실무에 참여한 경우, 사업책임자가 참여자별 기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12조 (연구년 및 휴직기간 중의 업적평가) ① 연구년 기간 중의 업적평가는 연구영역만 평가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발표된 연구 업적은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그 기간은 평가대상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

제13조 (주요 보직교수의 업적 경감조치) 교무위원급 및 단장(산학협력단, 국제교류단, 교육혁신단)에 해당하는 보직교수는 효율적 보직수행을 위하여 업적을 경감하며, 보직교수별 업적평가 경감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4조 (보고 및 통보) 규정된 최저소요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수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연도 각 영역별 소요점수 미달자는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9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규정명, 제4조 제3항 개정 <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5조 제

1항 제2호 삭제, 제5조 제1항 제4호 개정, 제7조 제1항 개정, 제7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6호, 제17호 신설, 제7조 제3항 개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개정 <2019 제18차 교무위원회>)

제2조(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 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내지 [별표 2]의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 상한점수는 2022년 2월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제13조, [별표 5], [별표 7] 개정 <2020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3항, 제7조 제3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7호, 제11조 제3항, [별표 1], [별표 5] 개정 <2020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9조 제1항 제8호, 제13조, [별표 1], [별표 5], [별표 7] 개정 <2020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7조 제1항 제14호, 제13조, [별표 5], [별표 7] 개정 <2020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2호, [별표 4] 개정 <2020 제31차 교무위원회>)

[별표 1]

일반전공의 평가항목 및 기준 (신제도)¹⁾

1. 연구영역

분야	항목	점수
논문	국제저명학술지(AHCI, SSCI, SCIE) ^{주)}	1,000 / 1,200 / 1,500
	SCOPUS 학술지	600
	기타국제 학술지	20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360
	기타국내 학술지	100
저서	전공분야의 국외 전문 학술저서	(인문·사회) 1000 (자연A·자연B·미술) 800
	전공분야의 국내 전문 학술저서	(인문·사회) 500 (자연A·자연B·미술) 400
	전공분야의 대학교재·교양저서	(인문·사회) 300 (자연A·자연B·미술) 260
	학술번역서·문학작품단행본	
	편저·학술자료집·사료편찬집·수험서·사전편찬·검정교과서	160
	일반서적	100
학술연구 보고서	연구보고서 A (산학협력단 관리과제)	80
	연구보고서 B (기타)	20
	국제(국내)표준안 채택	80
학술회의 활동	국제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200
	국내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100
	교내외 공인 세미나/학술회의/토론회 발표	20
	교내외 학회/학술회의/토론회 사회/좌장/토론자	10
창작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제)	200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내저명)	100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획득	100
연구관련 수상	국가 공인단체, 국내외학회 수상	300
	국내외학회 우수발표 수상	150

주) 국제저명학술지 1편 점수 차등화 기준은 'IF에 따른 분야별 백분위'를 따르며, 2개 이상 분야로 분류된 학술지는 유리한 분야의 백분위를 따른다.(※ IF 또는 공개된 순위가 없을 경우, 1,200점 부여)
 - 1,500점 : 분야 상위 10% / 1,200점 : 분야 상위 10% ~ 하위 20% / 1,000점 : 분야 하위 20%

1) 적용대상 : 2019년 3월 기준 정년보장 전임교원, 2019년 9월 이후 승진/재임용 기간이 새로 시작된 교원.
 구제도A 적용대상 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을 신청한 경우

2. 교육영역

분야	항목	점수	상한
강의	강의평가	(정규)학기당 175 + [(본인강의평점평균-단과대학평점평균)×100]	
	강의개선 (학부)	강의평가결과 · 직전학기 평점평균 대비 상승값 x 150 · 해당학기 평점평균 4.5 이상 : 60 · 2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유리한 점수 적용	
	강의시간	(정규)학기당 책임시수 충족시 30 + (정규)학기당 (초과시수)×10	학기당 50
	대형강의(120명이상) 대형강의(80명이상 - 120명미만) 대형강의(60명이상 - 80명미만)	학점 수 × 5 학점 수 × 4 학점 수 × 3	
	강의계획서 제출	(정규) 학기당 15	
	e-class 개설 강좌	(정규) 학기당 5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정규) 강좌 수 x 시험 횟수 x 3	
	강의록 공개	강좌 수 x 5	
	영어강의	강좌당 x 25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1회당 5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강좌당 x 30	
	공개강의	1회당 20	
	수업촬영 및 분석	1회당 20	
	교양과목 개설	강좌당 10 (분반 제외)	
	결강·보강계획서 미제출	건당 x -5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당x -5	
	성적처리 기간 미준수	강좌당 x -10	
논문 지도	석·박사배출	석사 수 × 10 박사 수 × 30	
학생 지도	학부 배정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배정학생 상담 1회당 2점	학기당 50
	학부 기타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상담 1회당 2점	학기당 50
	학생상담시간 공지	(정규) 학기당 15	
	세계문화체험 지도교수	학기당 10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교육 관련 수상		50	
정부 정책 사업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강좌당 10	
	Honors 프로젝트, 전공인턴십, 기업맞춤형 교과목 개설	강좌당 10	
	창의적 PBL, 블렌디드 러닝 (Blended Learning), 플립 러닝 (Flipped Learning) 교과목 개설	신규강좌당 20, 재운영강좌당 10 (블렌디드러닝 재운영 제외, 분반 제외)	

3. 봉사영역

분야	항목	점수
교내봉사	대학원장, 학·처장, 주요 단장 1년	100
	부장급, 특성화사업단장 1년	70
	전공주임, 학과장급 1년	50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급 1년	20
	위원회 위원장 1년(총장 임명)	50
	위원회 위원 1년(총장 임명)	15 ~ 25
	평생교육원 강좌 1회	10
	사회봉사 지도교수 1회	20
	소학회 지도교수	학기당 10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 지도교수	학기당 10
	학교현장실습 중간방문지도 (학기)	10
	외국인 유학생 지도	학기당 5
	신입생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참가	10
	교내 특정/정책과제 참여 1건	30
	교수회의 참석 1회	15
	입시(신입/편입) 전형 참가(평가, 출제, 감독, 교육이수 등) 1회	5 ~ 15
교외봉사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제 학회 임원 1년	20
	국내 학회 임원 1년	20
	정부관련 위원회 위원 1년	10
	법인단체 임원 1년(총장 사전 승인 필요)	10
	교원연수 참여 1건	10
	공인된 대회/경기/전시회 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10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특강, 기고, 방송출연 등) 1건	10
	학술지논문, 타교대학원 논문 심사, 과제평가·선정심사 1편	10
	고시 출제 채점 1건	10
	정부기관, 공공단체 업무평가 또는 자문 1건	10
봉사관련 수상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20

4. 산학협력영역

분야		항목		점수		상한점수	
				인문사회미술	자연정보		
연구	지식 재산권	국외발명특허등록		1200			
		국내발명특허등록		400			
		신품종등록		300			
		컴퓨터소프트웨어등록		100		연 200	
		디자인등록		100			
		실용신안등록		100			
	기술 이전	기술이전 실적 (1000만원 이상)		600			
		기술이전 실적 (1000만원 미만)		300			
		이전료 100만원당		20			
	교외 연구	교외연구과제 선정		50	20		
		교외 연구비 100만원당		2		건당 200	
	산업 자문	산업자문 계약 100만원당		1			
		산업자문 실적		10			
창업	교원 창업,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50				
	재정적 기여 100만원당		100				
교육	현장 실습	방학제 현장실습과정 지도 1명		2		연 100	
		학기제 현장실습과정 지도 1명		5			
	캡스톤 디자인	교내외 경연대회 입상	대상	30			
			금상,은상,동상	20			
			입상(동상 미만)	10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10			
	강의	산학연계 정규교과 운영		50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10			
	봉사	취창업 지원	기업 취업 실적 1건		25		
			취업정보 제공 실적 1건		2		연 10
(취업)기업체 방문 실적 1건			5		연 30		
기업 채용설명회 본교 유치			10		연 10		
취업그룹 진로지도(학기)			10				
학생 창업지원(소학회, 동아리)(학기)			10				
가족 회사		가족회사협의회 구성(신규) 1건		40	30		
		가족회사협의회 운영 및 가족회사 지원 1건		20	10	5건	
		가족회사 유치(MOU 체결) 1건		20	10		
기타		산학연 방문 특강 1회		10			
		산업체 자문위원 1년		10			
		산학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1건		10			
		산업체 기술지도, 업무평가 또는 경영자문 1건		10			
		국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0-30			
		사업계획서 작성 국고지원사업 선정		0-20			
	국고지원사업 운영 및 실무 참여(1년)		0-10				

[별표 2]

일반전공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제도B)²⁾

1. 연구영역

분야	항목	점수	
		인문사회	자연정보기술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 ^{주1)}	1,000/ 1,200/ 1,500	
	SCOPUS 학술지	500	
	기타국제 학술지	36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360	
	기타국내 학술지	150	
	대학연구소논문집	160	
	기타논문집	80	
저서	전공분야의 국외 전문 학술저서	1000	800
	전공분야의 국내 전문 학술저서	500	400
	전공분야의 대학교재·교양저서	300	260
	학술번역서·문학작품단행본	300	260
	편저·학술자료집·사료편찬집·수험서·사전편찬·검정교과서 일반서적	160 100	
학술연구보 고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80	
	국제(국내)표준안 채택	80	
	연구보고서 A	40	
	연구보고서 B	20	
학술회의활 동	국제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200	
	국내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100	
	교내외 공인 세미나/학술회의/토론회 발표	20	
	교내외 학회/학술회의/토론회 사회/좌장/토론자	10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제)	200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내저명)	100	
창작	문예지 기고 1회	40	
	정기간행물 기고(비평, 서평, 평론, 리뷰) 1회	20	
	공개SW 라이선스 획득	100	
연구관련 수상	국내외학회 우수연구자 수상	400	
	국가 공인단체에서 수상	200	
	국내외학회 우수발표 수상	150	

주1) 국제저명 학술지 1편 점수 차등화 기준은 'IF에 따른 카테고리 내 백분위'를 따르며, 2개 이상 카테고리
로 분류된 학술지는 유리한 카테고리의 순위를 따른다.(※ IF 또는 공개된 순위가 없을 경우 1,200점
부여)

- 1,500점 : 카테고리 내 상위 10% / 1,200점 : 카테고리 내 상위 10% ~ 하위 20% / 1,000점 : 하위 20%

2) 적용대상 : 2017년 3월 이후 2019년 9월 이전, 승진/재임용 기간이 새로 시작된 교원 (승진/재임용 이
후 신제도로 변경 적용) ※ 평가세부기준 : 당시의 기준을 따름

2. 교육영역

분야	항목	점수	연간 상한
강의	강의평가	(정규)학기당 175 + [(본인강의평점평균-단과대학평점평균)×100]	
	강의시간	(정규)학기당 책임시수 총족시 30 + (정규)학기당 (초과시수)×10	학기당 50
	대형강의(120명이상) 대형강의(80명이상 - 120명미만) 대형강의(60명이상 - 80명미만)	학점 수 × 5 학점 수 × 4 학점 수 × 3	
	강의계획서 제출	(정규) 학기당 15	
	가상강의 개설 강좌	(정규) 학기당 5	
	학생면담시간 공지	(정규) 학기당 15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정규) 강좌 수 x 시험 횟수 x 3	
	강의록 공개	강좌 수 x 5	
	영어강의	강좌당 x 50	100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1회당 5	
	바름인성교육 참여	1회당 20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강좌당 30	
	공개강의	1회당 20	
	수업촬영 및 분석	1회당 20	
	교양과목 개설	강좌당 10	20
	결강·보강계획서 미제출	건당 x -5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당 x -5	
	성적처리 기간 미준수	강좌당 x -10	
논문지 도	석·박사배출	석사 수 × 10 박사 수 × 30	
학생지 도	학부 배정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배정학생 상담 1회당 2점	학기당 100
	학부 기타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상담 1회당 2점	100
	동아리, 소학회, 세계문화체험, 적성계발트랙, 사제동행 독서 프로 그램, 사제동행 학술연구 프로그램 지도교수	학기당 10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교육 관련 수상		50	
정부 정책 사업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강좌당 10	
	ACE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강좌당 10 (PBL,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신규강좌당 20, 재운영강좌당 10)	

3. 봉사영역

분야	항목	점수	연간상한
교내봉사	대학원장, 학·처장, 주요 단장 1년	100	
	부장급, 특성화사업단장 1년	70	
	전공주임, 학과장, 위원회 위원장급 1년(총장 임명)	50	
	위원회 위원급 1년(총장 임명)	20	
	부속교육기관·대학로캠퍼스 아카데미 1강좌	10	
	사회봉사 지도교수 1회	20	
	교수회의 참석 1회	10	
	교내 특정/정책과제 참여 1건	10	
	입시(신입/편입) 전형 또는 설명회 참가 1회	5	
교외봉사	국제 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내 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제 학회 임원 1년	10	
	국내 학회 임원 1년	10	
	정부관련 위원회 위원 1년	10	
	법인단체 임원 1년(총장 사전 승인 필요)	10	
	교원연수 참여 1건	10	
	공인된 국제대회/국제전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30	
	공인된 국내전국규모대회/전시회 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20	
	학술지논문, 타교대학원 논문 심사, 과제평가·선정심사 1편	5	100
	고시 출제 채점 1건	5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특강, 기고, 방송출연 등) 1건	5	
	정부기관, 공공단체 업무평가 또는 자문 1건	5	
봉사관련수 상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20	

4. 산학협력영역

분야		항목		점수		상한점수
				인문사회미술	자연정보	
연구	특허	국외발명특허등록		1200		
		국내발명특허등록		400		
		신품종등록		300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		100		연 200
		디자인등록(등록유지결정)		100		
		실용신안특허(등록유지결정)		100		
	기술이전	기술이전 실적		500		
		이전료 100만원당		20		
	교외연구	교외연구과제 선정		50	20	
		교외연구 우수 결과물 선정		50		
		교외 연구비 100만원당		2		건당 200
	산업자문	산업자문 계약 100만원당		1		
		산업자문 실적		10		
창업	교원 창업,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50			
교육	현장실습	방학제 현장실습과정 지도 1명		2		연 100
		학기제 현장실습과정 지도 1명		5		
	캡스톤디자인	교내외 경연대회 입상	대상	30		
			금상,은상,동상	20		
			입상(동상 미만)	10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운영		10		
	강의	산학연계 정규교과 운영		50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		10		
	취창업지원	취업정보 제공 실적 1건		15	10	
		(취업)기업체 방문 실적 1건		15	10	
		기업 취업 실적 1건		40	30	
취업그룹 진로지도(학기)		15	10			
학생 창업지원(소학회, 동아리)(학기)		15	10			
봉사	가족회사협의회 구성(신규) 1건		40	30		
	가족회사협의회 운영 1건		20	10	인문사회 연 100 자연정보 연 50	
	가족회사 유치(MOU 체결) 1건		20	10		
	산학연 방문 특강 1회		10	5		
	산업체 자문위원 1년		10			
	산업체 기술지도, 업무평가 또는 경영자문 1건		10			
	산학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1건		10			
	국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0-30			
	사업계획서 작성 국고지원사업 선정		0-20			
	국고지원사업 운영 및 실무 참여(1년)		0-10			

[별표 3]

일반전공의 평가항목 및 기준 (구제도A)³⁾

1. 연구영역

분야		항목	점수
논문		국제저명 학술지(AHCI, SSCI, SCIE)	1,200
		SCOPUS 학술지	500
		기타국제 학술지	360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400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360
		기타국내 학술지	150
		대학연구소논문집	160
		기타논문집	80
		박사학위논문	400
저서		전공분야의 국외 전문 학술저서	800
		전공분야의 국내 전문 학술저서	400
		전공분야의 대학교재·교양저서	260
		학술번역서·문학작품단행본	260
		편저·학술자료집·사료편찬집·수험서·사전편찬·검정 교과서	160
		일반서적	100
학술연구보고서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보고서	80
		국제(국내)표준안 채택	80
		연구보고서 A	40
		연구보고서 B	20
학술회의활동		국제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200
		국내 학술회의(전문 또는 초록 게재) 발표	100
		교내외 공인 세미나/학술회의/토론회 발표	20
		교내외 학회/학술회의/토론회 사회/좌장/토론자	10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제)	200
		전공분야 관련 창작물 연출 및 기획 1건(국내저명)	100
창작		문예지 기고 1회	40
		정기간행물 기고(비평, 서평, 평론, 리뷰) 1회	20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획득	100
연구관련 수상		국제 학회 및 단체에서 수상	140
		국내 학회에서 수상	100
		국가 공인단체에서 수상	140
산학협력	특허	국외발명특허등록	800
		국내발명특허등록	400
		신품중등록	300
		컴퓨터소프트웨어 등록	200
		실용신안특허(등록유지결정)	100
		디자인등록(등록유지결정)	40
	기술이전	이전료 100만원당	20
		기술이전 실적	200
	교외연구	교외연구과제 신청	10
		교외연구 우수 결과물 선정	20
		교외 연구비 100만원당	2

3) 적용대상 : 2017년 3월 이전 조교수·부교수로서 2019년 3월 기준 동일한 직급의 승진/재임용 기간 중에 있는 교원 (승진/재임용 이후 신제도로 변경 적용) ※ 평가세부기준 : 당시의 기준을 따름

2. 교육영역

분야	항목	점수	연간상한
강의	강의평가	(정규)학기당 175 + [(본인강의평점평균-단과대학평점평균) ×100]	
	강의시간	(정규)학기당 (담당시수)×5	
	대형강의(120명이상) 대형강의(80명이상 - 120명미만) 대형강의(60명이상 - 80명미만)	학점 수 × 5 학점 수 × 4 학점 수 × 3	
	강의계획서 제출	(정규) 학기당 15	
	가상강의 개설 강좌	(정규) 학기당 5	
	학생면담시간 공지	(정규) 학기당 15	
	직전년도 중간/기말 시험문제 공개	(정규) 강좌 수 x 시험 횟수 x 3	
	강의록 공개	강좌 수 x 5	
	영어강의	강좌당 x 50	100
	교수법 관련 프로그램 참여	1회당 5	
	바롬인성교육 참여	1회당 20	
	서비스-러닝(S-L) 교과목 운영	강좌당 30	
	공개강의	1회당 20	
	수업촬영 및 분석	1회당 20	
	교양과목 개설	강좌당 10	20
	결강·보강계획서 미제출	건당 x -5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당 x -5	
	성적처리 기간 미준수	강좌당 x -10	
논문지도	석·박사배출	석사 수 × 10 박사 수 × 30	
학생지도	학부 배정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배정학생 상담 1회당 2점	학기당 100
	학부 기타학생지도·상담	(정규) 학기당 상담 1회당 2점	100
	취업그룹진로지도	(정규) 학기당 10	
	동아리, 소학회, 세계문화체험, 적성계 발트랙, 사제동행 독서 프로그램, 사 제동행 학술연구 프로그램 지도교수	학기당 10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교육 관련 수상		50	
정부정책 사업	티칭포트폴리오 구축	강좌당 10	
	ACE사업 관련 교과목 개설	강좌당 10 (PBL,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신규강좌당 20, 재운영강좌당 10)	

3. 봉사영역

분야	항목	점수
교내봉사	대학원장, 학·처장 1년	100
	부장급, 특성화사업단장 1년	70
	전공주임, 학과장, 위원회 위원장급 1년(총장 임명)	50
	위원회 위원급 1년(총장 임명)	20
	부속교육기관·대학로캠퍼스 아카데미 1강좌	10
	사회봉사 지도교수 1회	20
	취업정보 및 기회제공	
	- 취업정보 제공 실적 1건	10
	- (취업)기업체 방문 실적 1건	10
	- 연고기업 취업 실적 1건	20
	교수회의 참석 1회	10
교외봉사	교내 특정/정책과제 참여 1건	10
	입시(신입/편입) 전형 또는 설명회 참가 1회	5
	국제학회 임원 1년(국제 표준화 임원 활동)	30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1년	30
	국내학회 임원 1년	20
	국내학술지 편집위원 1년	20
	정부관련 위원회 위원 1년(국내 표준화 회의 활동)	20
	법인단체 임원 1년(총장 사전 승인 필요)	20
	학술지논문, 타교대학원 논문 심사 1편	10
	과제평가·선정심사 1편	10
	고시 출제 채점 1건	10
	교원연수 참여 1건	10
	공인된 국제대회/국제전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30
	공인된 국내전국규모대회/전시회 심판/심사위원 1회(미술/체육)	20
봉사관련 수상	국가단체에서 수여한 상	30
	민간단체에서 수여한 상	20
산학협력 봉사활동	산학연 자문위원 1년	10
	교육, 사회, 문화단체 봉사(특강, 기고, 방송출연 등) 1건	10
	정부기관, 공공단체, 기업체업무평가 또는 자문 1건	10
	산학프로젝트 운영 및 참여 건수	20
	기업 MOU 체결	5

[별표 4]

특수전공 연구영역 평점

1. 스포츠운동과학과

업적내용	항 목	점수
선수·지도자·심판	국제대회 입상	140
	국내전국대회 입상	40
	국제자격증취득	140
	국내자격증취득	40
체조·무용 등의 실기	연구 발표 1인 주관	200
	연구 발표 2인 주관	140
	연구 발표 3인 주관	100
	연구 발표 4인 이상 주관	100
수상	국제기구 표창 및 훈장 수여	200
	정부 표창 및 훈장 수여	140
	국내공인단체 표창 수여	60

2. 미술계열(주6)

업적내용	항 목	점수
전시	외부 기획, 초대, 기금(주1) 개인전	1,000
	개인전	800
	외부 기획, 초대, 기금 다수작출품전(주2)	500
	다수작출품전	400
	외부 기획, 초대, 기금 국제단체전(주3)	400
	국제단체전	250
	외부 기획, 초대, 기금 단체전	250
	단체전	200
디자인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	공인된 산학협동프로젝트 작품(주4)	350
	기업의뢰 및 외부위촉에 의한 디자인설계 및 예술품 제작(주5)	200
수상	공인된 국제 공모전 최고상	500
	공인된 국제 공모전 수상	400
	공인된 국내 공모전 최고상	400
	공인된 국내 공모전 수상	250
	미술관계 훈장	200
기타	국제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500
	국내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350
	일반급 전시기획 커미셔너(큐레이터)	200

주1) 외부 기획, 초대 전시는 학교 외부의 미술관, 전문화랑, 예술관련단체 및 실험적 대안공간 등에 의해 기획되거나 또는 초대를 받아 진행되는 전시를 의미하며, 기금 전시라 함은 문화관련 재단이나 위원회로부터 500만원 이상의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된 전시를 의미한다. 외부 기획, 초대, 기금 전시는 기획, 초대, 기금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주2) 다수작출품전은 3점 이상의 작품을 출품한 전시를 의미한다.

주3) 국제전은 3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내 및 국외 전시를 의미한다.

주4) '공인된 산학협동 프로젝트'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진행된 디자인프로젝트를 의미함.

주5) '기업의뢰 및 외부위촉에 의한 디자인설계 및 예술품 제작'이란 서울여대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은 디자인 프로젝트 및 예술품 제작을 의미함. 외부의뢰 및 위촉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주6) 미술계열 : 산업디자인학과, 현대미술전공, 공예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별표 5]

교내보직별 봉사점수

항 목	해당보직	점수
대학원장, 학·처장, 주요 단장(1년)	대학원장, 학장,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100
실·부장급(1년)	교목실장, 학부장, 국제교류단장, 교육혁신단장, 도서관장, 평생교육원장, 아동연구원장, 학보사·방송국 주간, 박물관장, 교수·학습센터장, 자율전공학부학부장, 정보전산원장, 국책사업단장, 정보보호영재교육원장, 교양교육부장, 바롬인성교육부장	70
학과장급(1년)	전공주임교수, 학과장, 연구소장, 기숙사 책임교수, 공동기기실 책임교수, 교양영어책임교수, 자율전공학부학사지도책임교수, 교수사정관, 사회봉사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 소프트웨어교육혁신센터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SI교육센터장, 교직지원센터장, 인권센터장	50
주임교수(1년)	연계융합전공 주임교수	20

주1)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월할하여 계산한다.

주2) 본 항목의 배점 기준, 시기, 변경사항 등은 관련 위원회 등의 결정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 6]

입시 항목 배점 세부기준

연번	구분	항목	배점
1	출제	논술고사/편입영어고사 출제	15
2		모의논술고사 특강, 출제	10
3		논술고사/모의논술고사 사전워크숍(개인별 1회 점수 인정), 채점위원 대상 채점방법 설명	5
4		실기고사 정물배치	10
5	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15
6		외국인전형, 재외국민전형, 실기고사 서류평가/면접평가/실기평가/실기채점	10
7		모의논술고사 채점, 논술채점	10
8	감독	실기고사/논술고사/편입영어고사 감독	10
9	교육	교육이수 15시간 이상	15
10		교육이수 15시간 미만	10
11	기타	고교연계프로그램	10
12		입학 중단연구 등 참여(개인별 1회 점수 인정)	10
13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활동	3

[별표 7]

주요보직교수의 업적평가 경감 사항

보직교수 범위	업적평가 경감
처 장	· 보직재임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재임기간동안 업적평가 영역별 소요점수 100% 경감 · 보직재임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재임기간동안 업적평가 영역별 소요점수 100% 경감 및 보직후 재임기간의 1/2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업적 평가 영역별 소요점수 100% 경감(주1) · 보직후 업적평가 경감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함 · 업적평가경감기간 산정은 학기 단위로 절하(주2)
대 학원장, 학장,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교목실장, 단장 (산학협력단,국제교류단, 교육혁신단)	· 보직재임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재임기간동안 업적평가 영역별 소요점수 50% 경감 · 보직재임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재임기간동안 업적평가 영역별 소요점수 100% 경감 · 업적평가 경감기간 산정은 학기 단위로 절하(주2)

주1) 경감사항이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처장 보직기간 종료 후 다른 주요보직 수행)할 경우, 추가 합산하지 아니하고 유리한 경우 하나만 인정한다.

주2) 보직 일괄 임명으로 한 학기에 1개월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 학기로 인정하여 학기단위로 절하하지 않는다.